

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민첩하고 유연한 정부를 구현하기 위하여 개방형 직위를 직제 시행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훈령·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내용으로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규정」 및 「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」이 개정되고,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이 정부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기술직군의 명칭을 과학기술직군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「공무원임용령」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,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자율적으로 증원할 수 있는 정원의 한도를 총정원의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의 : 법제처,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3. 8. 16. ~ 8. 2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5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7조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”으로 한다.

제8조제7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9조제6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”로 한

다.

제10조제7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2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0조의3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1조제4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으로,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 또는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 또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3조제6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·공업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·공업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6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

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18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”로 한다.

제19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”를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”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”로 한다.

제21조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”으로,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

구관으로 보한다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 보한다”로 한다.

제21조의2제2항 중 “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으로,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·기술규제조정과장·기술규제협력과장은 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”을 “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으로,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·기술규제조정과장·기술규제협력과장은 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”으로 한다.

제23조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4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, 심사팀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심사팀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6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”로,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27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

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”를 “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”로 한다.

제28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”를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”로, “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”를 “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”로 한다.

제29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0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1조제1항 중 “서기관·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

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
으로 한다.

제33조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행정
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서부광산
안전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”으로 한다.

제34조 본문 중 “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”을 “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
관”으로 한다.

제35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“1명(5급 1명)은”을 “2명(3급·4급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 1명, 5
급 1명)은”으로 한다.

제36조제1항 단서 중 “7퍼센트”를 “10퍼센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
“5명(5급 3명, 6급 2명)”을 “7명(4급·공업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
구관 또는 시설연구관 2명, 5급 3명, 6급 2명)”으로 한다.

제38조를 삭제한다.

별표 3, 별표 3의2, 별표 4, 별표 4의2, 별표 6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표 3]

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본문 관련)

총계	960
정무직 계	4
장관	1
본부장	1
차관	2
별정직 계	7
고위공무원단(장관정책보좌관)	1
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(장관정책보좌관)	2
비서(6급 상당)	1
비서(8급 상당)	1
비서(9급 상당)	2
일반직 계	949
고위공무원단	32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(비상안전기획관)	1
부이사관·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17
부이사관·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 석전문관	5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51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	11
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4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 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 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 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 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사연구관 · 농업연구관 · 임 업연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	73
행정사무관	64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 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 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 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사연구관 · 농업연구관 · 임업연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경연 구관 또는 시설연구관	282
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· 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6
전산사무관	1
해양수산사무관	1

행정주사	24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통계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 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사서주사 · 기상주사 · 사회복 지주사 · 감사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 · 수의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보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식품위생주 사 · 약무주사 · 간호주사 · 항공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공업연구사 · 학예연구사 · 편사연구사 · 농업연구사 · 임업연구사 · 해양수산연구사 · 기상연구사 · 보건연구 사 ·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	191
공업주사 · 통계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통신주사 ·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	11
운전주사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 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기상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의료기 술주사보 · 항공주사보 ·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 사보	6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 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(비서)	2
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	25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통계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· 방송통신서기 · 사서서기 · 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	14
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통계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· 방송통신서기 · 사서서기 · 보건서기 · 방재 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(비서)	1
운전서기	1
전산서기	1
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	9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서기보 · 사서서기보 · 보건서기보 · 방재안전서기보	4
운전서기보	7
사무운영주사	1
사무운영서기보	6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통계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시 설전문관 ·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	18
연구사	1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안전계획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사진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홍보 담당)	1

[별표 3의2]

<u>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정원표(제35조제1항 단서 관련)</u>	
총계	960
정무직 계	4
장관	1
본부장	1
차관	2
별정직 계	7
고위공무원단(장관정책보좌관)	1
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(장관정책보좌관)	2
비서(6급 상당)	1
비서(8급 상당)	1
비서(9급 상당)	2
일반직 계	949
고위공무원단	32
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(비상안전기획관)	1
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17
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 석전문관	5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51
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	11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4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 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 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 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 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사연구관 · 농업연구관 · 임 업연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경연구관 또는 시설연구관	73
행정사무관	63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 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기상사무관 · 사회복지사무관 · 농업사무 관 · 임업사무관 · 수의사무관 · 의료기술사무관 · 식품 위생사무관 · 의무사무관 · 약무사무관 · 간호사무관 · 항공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부감사관 · 공업연구관 · 학예연구관 · 편사연구관 · 농업연구관 · 임업연구관 · 해양수산연구관 · 기상연구관 · 보건연구관 · 환경연 구관 또는 시설연구관	307
공업사무관 · 통계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 산사무관 · 통신사무관 · 보건사무관 또는 공업연구관	6
전산사무관	1
해양수산사무관	1

행정주사	24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통계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 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사서주사 · 기상주사 · 사회복 지주사 · 감사주사 · 농업주사 · 임업주사 · 수의주사 · 해양수산주사 · 보건주사 · 의료기술주사 · 식품위생주 사 · 약무주사 · 간호주사 · 항공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공업연구사 · 학예연구사 · 편사연구사 · 농업연구사 · 임업연구사 · 해양수산연구사 · 기상연구사 · 보건연구 사 · 환경연구사 또는 시설연구사	183
공업주사 · 통계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통신주사 · 사서주사 또는 공업연구사	11
운전주사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 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기상주사보 · 사회복지주사보 · 농업주사보 · 의료기술 주사보 · 항공주사보 ·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감사주사보	49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통계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 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방재안전주사보 또는 별정직 7급 상당(비서)	2
행정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	22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통계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· 방송통신서기 · 사서서기 · 보건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	14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· 통계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	1

전산서기 · 방송통신서기 · 사서서기 · 보건서기 · 방재 안전서기 또는 별정직 8급 상당(비서)	
운전서기	1
전산서기	1
행정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	8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통계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 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· 방송통신서기보 · 사서서기보 · 보건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	4
운전서기보	7
사무운영주사	1
사무운영서기보	6
수석전문관 · 행정전문관 · 통계전문관 · 공업전문관 · 시 설전문관 ·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	18
연구사	1
전문경력관 가군(비상안전계획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사진 담당)	1
전문경력관 나군(홍보 담당)	1

[별표 4]

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1항 본문 관련)

1.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	
총계	224
일반직 계	224
고위공무원단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5
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 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3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 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1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 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 관	7
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 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공업연구 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40
행정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공업연구사 · 환경연구사 ·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	52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 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재안전 주사보	2
행정서기 · 사서서기 · 공업서기 · 환경서기 · 시설서기 · 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	11

행정서기보 · 사서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환경서기보 · 시설서기보 · 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	10
운전서기보	3
방호서기보	1
기계운영서기보 · 전기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	2
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45
공업연구사 · 환경연구사 ·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	32
2.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	
총계	26
일반직 계	26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1
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2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8
공업주사	4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7
공업주사보	1
행정서기 · 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	1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1
운전서기보	1
3.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	
가.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18
일반직 계	18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3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3

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	2
운전서기보	1
행정서기보 · 공업서기보 · 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
방호서기보	1
나.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15
일반직 계	15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3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2
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	2
방호주사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4
방호서기보	1
운전서기보	1
다.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10
일반직 계	10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· 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	1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3
행정서기보	1

방호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	1
전기운영서기보 또는 건축운영서기보	1
라.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8
일반직 계	8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 산주사	3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전기운영서기보·건축운영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	2
마.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7
일반직 계	7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 산주사	3
행정서기	1
전기운영서기보 또는 건축운영서기보	2
바.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8
일반직 계	8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 산주사	2
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1
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방호서기	1
사.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9
일반직 계	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 산주사	3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사무운영서기보	1
4.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	
총계	36
일반직 계	36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3
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1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 주사	6
공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	5
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2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7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	4
운전서기보	4
사무운영서기보	4
5. 전기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	

총계	9
일반직 계	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
행정주사 · 공업주사 ·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3
행정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6.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무원 정원표	
총계	16
일반직 계	16
고위공무원단	1
서기관	2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
행정사무관	7
행정주사	3
행정서기	1

[별표 4의2]

산업통상자원부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(제36조제1항 단서 관련)

1. 국가기술표준원 공무원 정원표

총계	224
일반직 계	224
고위공무원단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5
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공업연구관 · 환 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3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11
서기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전산사무관 · 방송통신사 무관 · 공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관	7
행정사무관 · 사서사무관 · 공업사무관 · 환경사무관 · 시설사무관 · 방송통신사무관 · 방재안전사무관 · 공 업연구관 · 환경연구관 · 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 관	42
행정주사 · 사서주사 · 공업주사 · 환경주사 · 시설주사 · 전산주사 · 방송통신주사 · 방재안전주사 · 공업연 구사 · 환경연구사 · 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사	50
행정주사보 · 사서주사보 · 공업주사보 · 환경주사보 · 시설주사보 · 전산주사보 · 방송통신주사보 또는 방 재안전주사보	2

행정서기·사서서기·공업서기·환경서기·시설서기 ·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	11
행정서기보·사서서기보·공업서기보·환경서기보· 시설서기보·전산서기보 또는 방재안전서기보	10
운전서기보	3
방호서기보	1
기계운영서기보·전기운영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 보	2
공업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보건연구 관	48
공업연구사·환경연구사·시설연구사 또는 보건연구 사	29
2. 광업등록사무소 공무원 정원표	
총계	26
일반직 계	26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 관	1
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2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8
공업주사	4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 보	7
공업주사보	1
행정서기·공업서기 또는 전산서기	1
행정서기 또는 전산서기	1
운전서기보	1

3. 자유무역지역관리원 공무원 정원표	
가.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18
일반직 계	18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3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3
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행정서기 또는 시설서기	2
행정서기보·공업서기보·시설서기보 또는 전산서기보	4
운전서기보	1
방호서기보	1
나.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15
일반직 계	15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3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2
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주사	2
방호주사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4
방호서기보	1
운전서기보	1
다.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10

일반직 계	10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 산주사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 보	3
행정서기보	1
방호서기보 또는 사무운영서기보	1
전기운영서기보 또는 건축운영서기보	1
라.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8
일반직 계	8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 산주사	3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 보	2
전기운영서기보·건축운영서기보 또는 방호서기보	2
마.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7
일반직 계	7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1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 산주사	3
행정서기	1

전기운영서기보 또는 건축운영서기보	2
바.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8
일반직 계	8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 산주사	2
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1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1
방호서기	1
사.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	
총계	9
일반직 계	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	2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 산주사	3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사무운영서기보	1
4. 광산안전사무소 공무원 정원표	
총계	36
일반직 계	36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3
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	1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·방재안전주사 또는 전산	6

주사	
공업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	5
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2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·방재안전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7
행정서기·공업서기·전산서기 또는 방재안전서기	4
운전서기보	4
사무운영서기보	4
5. 전기위원회사무국 공무원 정원표	
총계	9
일반직 계	9
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	3
행정주사·공업주사·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	3
행정주사보·공업주사보·시설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	2
6. 경제자유구역기획단 공무원 정원표	
총계	16
일반직 계	16
고위공무원단	1
서기관	2
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	2
행정사무관	7
행정주사	3
행정서기	1

[별표 6]

산업통상자원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(제39조제2항 및 제41조의6제2항 관련)

1. 원전전략기획관(존속기한: 2024년 12월 31일)

총계	1
일반직 계	1
고위공무원단	1

2. 미래자동차산업과(존속기한: 2023년 10월 31일)

총계	2
일반직 계	2
서기관·과학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	1
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·통계사무관·환경사무관·시설사무관·전산사무관·방송통신사무관·보건사무관·사서사무관·기상사무관·사회복지사무관·농업사무관·임업사무관·수의사무관·의료기술사무관·식품위생사무관·의무사무관·약무사무관·간호사무관·항공사무관·방재안전사무관·부감사관·공업연구관·학예연구관·편사연구관·농업연구관·임업연구관·해양수산연구관·기상연구관·보건연구관·환경연구관·시설연구관 또는 5등급 외무공무원	1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대변인) ① (생략)	제3조(대변인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대변인 밑에 홍보담당관 1명을 두되, 홍보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</u>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</u>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감사관) ① (생략)	제4조(감사관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감사관 밑에 감사담당관 1명을 두되, 감사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</u>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</u> -----.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6조(기획조정실) ① ~ ④ (생략)	제6조(기획조정실) ① ~ ④ (현행과 같음)
⑤ 기획조정실장 밑에 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· 규제개혁법무담당관 · 정보관리담당관 · 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을 두되, 기획재정담당관 · 혁신행정담당관 · 규제개혁법무담당관 · 정보관리담당관 · 정보보호담당관 및 산업재난담당관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</u> 또는 공업연구관으로	⑤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</u> -----

보한다.	-----.
⑥ ~ ⑪ (생략)	⑥ ~ ⑪ (현행과 같음)
제7조(운영지원과) 운영지원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</u> 으로 보한다.	제7조(운영지원과) ----- 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</u> -----.
제8조(산업정책실) ① ~ ⑥ (생략)	제8조(산업정책실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
⑦ 산업정책실에 산업정책과 · 산업일자리혁신과 · 산업환경과 · 산업공급망정책과 · 소재부품장비개발과 · 철강세라믹과 · 기계로봇항공과 · 자동차과 · 조선해양플랜트과 · 엔지니어링디자인과 · 반도체과 · 배터리전기전자과 · 바이오융합산업과 · 섬유탄소나노과 · 화학산업팀 · 디스플레이가전팀을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</u>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각 팀장은 <u>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</u>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</u> -----.
⑧ ~ ⑫ (생략)	⑧ ~ ⑫ (현행과 같음)
제9조(산업기반실) ① ~ ⑤ (생략)	제9조(산업기반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⑥ 산업기반실에 산업기술정책	⑥ -----

과·산업기술개발과·산업기술 시장혁신과·지역경제총괄과· 지역경제진흥과·입지총괄과· 중견기업정책과·중견기업지원 과·유통물류과 및 규제샌드박 스팀을 두되, 각 과장은 <u>부이사 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</u>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팀장은 <u>서기관 ·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</u> <u>으로 보한다.</u>	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 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</u> - ----- <u>과학기술 서기관·서기관 또는 공업연 구관으로 보한다.</u>
⑦ ~ ⑪ (생 략) 제10조(에너지정책실) ① ~ ⑥ (생 략) ⑦ 에너지정책실에 에너지정책 과·에너지효율과·에너지기술 과·전력산업정책과·전력시장 과·신산업분산에너지과·전력 계통혁신과·재생에너지정책과 ·재생에너지산업과·재생에너 지보급과·수소경제정책과·수 소산업과 및 에너지안전과를 두 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 관·기술서기관</u> 또는 공업연구 관으로, 팀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 기관·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 무관으로 보한다.</u>	⑦ ~ ⑪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에너지정책실) ① ~ ⑥ (현행과 같음) ⑦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 술서기관·서기관</u>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 ·서기관·공업사무관 또는 행 정사무관</u> -----.

⑧ ~ ㉑ (생 략) 제10조의2(자원산업정책국) ① (생 략) ② 자원산업정책국에 자원안보 정책과·석유산업과·가스산업 과 및 석탄광물산업과를 두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· 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</u>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 ③ ~ ⑥ (생 략) 제10조의3(원전산업정책국) ① (생 략) ② 원전산업정책국에 원전산업 정책과·원전수출진흥과·원전 환경과 및 원전지역협력과를 두 며, 각 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 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관</u>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 ③ ~ ⑥ (생 략) 제11조(통상정책국) ① ~ ③ (생 략) ④ 통상정책국에 통상정책총괄 과·미주통상과·구주통상과· 신통상전략과·디지털경제통상 과 및 기후에너지통상과를 두 되, 통상정책총괄과장·미주통	⑧ ~ ㉑ (현행과 같음) 제10조의2(자원산업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 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</u> -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0조의3(원전산업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 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관</u> -----. ③ ~ ⑥ (현행과 같음) 제11조(통상정책국) ① ~ ③ (현 행과 같음) ④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
---	---

상과장 및 구주통상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고, 신통상전략과장 · 디지털경제통상과장 및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.

⑤ ~ ⑩ (생략)

제12조(통상협력국) ① (생략)

② 통상협력국에 통상협력총과 · 동북아통상과 · 아주통상과 및 중동아프리카통상과를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

③ ~ ⑥ (생략)

제13조(통상교섭실) ① ~ ⑤ (생략)

⑥ 통상교섭실에 자유무역협정 정책기획과 · 자유무역협정이행과 · 통상협정활용과 · 자유무역협정협상총괄과 · 자유무역협정상품과 · 자유무역협정서비스투자과 ·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연구관 -----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또는 -----.

⑤ ~ ⑩ (현행과 같음)

제12조(통상협력국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연구관 -----.

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제13조(통상교섭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· 통상법무기획과 · 세계무역기구과 · 다자통상협력과 · 통상분쟁대응과 및 인도태평양통상기획팀을 두되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하며, 팀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· 공업연구관 또는 수석전문관으로 보한다.

⑦ ~ ⑭ (생략)

제14조(무역투자실) ① ~ ⑤ (생략)

⑥ 무역투자실에 무역정책과 · 무역진흥과 · 수출입과 · 투자정책과 · 투자유치과 · 해외투자과 · 무역안보정책과 · 무역안보심사과 및 기술안보과를 두며, 각 과장은 부이사관 ·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또는 공업연구관으로, 팀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⑦ ~ ⑰ (생략)

제17조(지원총괄과) ① 지원총괄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연구관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· 공업연구관 -----.

⑦ ~ ⑭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무역투자실) ① ~ ⑤ (현행과 같음)

⑥ -----

----- 부이사관 ·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 -----.

⑦ ~ ⑰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지원총괄과) ①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

공업연구원·환경연구원·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으로 보한다. ② (생 략) 제18조(표준정책국) ① (생 략) ② 표준정책국에 표준정책과·국제표준협력과·산업표준혁신과·전기전자정보표준과·기계융합산업표준과·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을 두되, 표준정책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원·환경연구원·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</u>으로, 국제표준협력과장·산업표준혁신과장·전기전자정보표준과장·기계융합산업표준과장·바이오화학서비스표준과장 및 국제표준화기구전략대응팀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원·환경연구원·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</u>으로 보한다. ③ ~ ⑨ (생 략) 제19조(제품안전정책국) ① (생	·공업연구원·보건연구원·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 --- ---. ② (현행과 같음) 제18조(표준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원·보건연구원·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원·보건연구원·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원·보건연구원·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</u>으로 보한다. ③ ~ ⑨ (현행과 같음) 제19조(제품안전정책국) ① (현행
--	--

략) ② 제품안전정책국에 제품안전정책과·제품시장관리과·제품안전정보과·전기통신제품안전과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를 두되, 제품안전정책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원·환경연구원·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</u>으로, 제품시장관리과장·제품안전정보과장·전기통신제품안전과장 및 생활어린이제품안전과장은 <u>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원·환경연구원·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</u>으로 보한다. ③ ~ ⑦ (생 략) 제21조(적합성정책국) ① (생 략) ② 적합성정책국에 시험인증정책과·적합성평가과·인증산업진흥과 및 계량측정제도과를 두되, 시험인증정책과장은 <u>부이사관·서기관·기술서기관·공업연구원·환경연구원·시설연구원 또는 보건연구원</u>으로, 적합	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원·보건연구원·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원·보건연구원·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</u>으로 보한다. ③ ~ ⑦ (현행과 같음) 제21조(적합성정책국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·과학기술서기관·서기관·공업연구원·보건연구원·환경연구원 또는 시설연구원</u> -----
---	--

성평가과장, 인증산업진흥과장 및 계량측정제도과장은 <u>서기관</u> · <u>기술서기관</u> · <u>공업연구관</u> · <u>환경연구관</u> · <u>시설연구관</u> 또는 <u>보건연구관</u> 으로 보한다.	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공업연구관</u> · <u>보건연구관</u> · <u>환경연구관</u> 또는 <u>시설연구관</u> 으로 보한다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1조의2(기술규제대응국) ① (생 략)	제21조의2(기술규제대응국) ① (현행과 같음)
② 기술규제대응국에 기술규제정책과 · 무역기술장벽협상과 · 기술규제조정과 · 기술규제협력과를 두되, 기술규제정책과장은 <u>부이사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기술서기관</u> · <u>공업연구관</u> · <u>환경연구관</u> · <u>시설연구관</u> 또는 <u>보건연구관</u> 으로, 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 · 기술규제조정과장 · 기술규제협력과장은 <u>서기관</u> · <u>기술서기관</u> · <u>공업연구관</u> · <u>환경연구관</u> · <u>시설연구관</u> 또는 <u>보건연구관</u> 으로 보한다.	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부이사관</u> ·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공업연구관</u> · <u>보건연구관</u> · <u>환경연구관</u> 또는 <u>시설연구관</u> 으로, <u>무역기술장벽협상과장</u> · <u>기술규제조정과장</u> · <u>기술규제협력과장</u> 은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공업연구관</u> · <u>보건연구관</u> · <u>환경연구관</u> 또는 <u>시설연구관</u> 으로 보한다.
③ ~ ⑥ (생 략)	③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3조(광업등록사무소장) 광업등록사무소장은 <u>서기관</u> · <u>기술서기관</u> · <u>행정사무관</u> 또는 <u>공업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제23조(광업등록사무소장)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공업사무관</u> 또는 <u>행정사무관</u> -----.

제24조(하부조직) ① 광업등록사무소에 등록팀 및 심사팀을 두되, 등록팀장은 <u>서기관</u> · <u>기술서기관</u> · <u>행정사무관</u> 또는 <u>공업사무관</u> 으로, 심사팀장은 <u>행정사무관</u> 또는 <u>공업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제24조(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공업사무관</u> 또는 <u>행정사무관</u> 으로, <u>심사팀장</u> 은 <u>공업사무관</u> 또는 <u>행정사무관</u> ----- --.
② · ③ (생 략)	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제26조(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)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·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·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·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<u>서기관</u> 또는 <u>기술서기관</u> 으로, 동해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및 울춘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은 <u>행정사무관</u> · <u>공업사무관</u> 또는 <u>시설사무관</u> 으로 보한다.	제26조(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또는 <u>서기관</u> 으로----- ----- ----- <u>공업사무관</u> · <u>시설사무관</u> 또는 <u>행정사무관</u> ----- -----.
제27조(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) ① 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· 수출산업과 및 투자홍보과를 두고, 관리과장은 <u>서기관</u> · <u>기술서기관</u> · <u>행정사무관</u> · <u>공업사무관</u> 또는 <u>시설사무관</u> 으로, 수출산업과	제27조(마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과학기술서기관</u> · <u>서기관</u> · <u>공업사무관</u> · <u>시설사무관</u> 또는 <u>행정사무관</u> 으로-----

장 및 투자홍보과장은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8조(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) ①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· 수출산업과 및 투자유치과를 두되, 관리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~ ④ (생략)

제29조(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) ① 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되, 관리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30조(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

-----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8조(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) ① -----
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제29조(대불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) ①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

의 하부조직) ① 김제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, 관리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31조(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) ① 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 관리과 및 수출산업과를 두고, 관리과장은 서기관 · 기술서기관 ·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행정사무관 ·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.

② · ③ (생략)

제33조(광산안전사무소장) 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· 중부광산안전사무소장 및 남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,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행정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.

의 하부조직) ①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31조(울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의 하부조직) ①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· 서기관 ·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으로, 수출산업과장은 공업사무관 · 시설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② · ③ (현행과 같음)

제33조(광산안전사무소장) -----
----- 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, 서부광산안전사무소장은 공업사무관 또는 행정사무관-----.

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제38조(개방형직위에 관한 특례) ① 직제 제48조에서 “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개방형직위”란 감사관,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대응국장을 말한다. ②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4조제5항에 따라 통상분쟁대응과장,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보과장 및 국가기술표준원 기술규제협력과장은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.	----- --. <삭 제>
---	--